

[별지 제1호]

임원 선임 보고

문서번호 BNK투증인사26-1

2026. 1. 7.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자본시장제도팀

제 목 임원 선임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BNK투자증권의 임원 선임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1. 임원 선임 내용 1부
2. 임원 선임 심사표 1부. 끝.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인)



작 성 자 : 김 대 용(파트너)

전화번호 : 02-3215-7514

(붙임 1)

임원 선임 내용

1. 선임

지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 (만료일)	업무 범위	주요 경력 ¹⁾	결정 사항 ²⁾	자격요건 확인결과 ³⁾	채무 ⁴⁾	채무 세부내용 ⁴⁾
사장 (상임, 미등기)	신명호 (辛明鎬)	620529	2026.01.01 (2024.01.01 , 연임1)	2026.12.31	대표이사 (회사총괄)	-18.01 유안타증권IB사업부문대표 직무 -21.01 동사 고문 -22.04 현대차증권 고문 -23.04 법무법인(유한)플러스 고문 -24.01 BNK투자증권 대표이사(現)	-	적격	- 내부통제 총괄관리 업무 - 채무구조조정 관련 업무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및 시행령 25조의3에 의거 정해진 업무범위
전문 (상임, 미등기)	이상선 (李相善)	650711	2026.01.01 (2024.03.01 , 연임1)	2026.12.31	경영지원 본부 총괄	-19.01 KB증권 중부지역본부장 직무 -19.05 동사 경영지원본부장 직무 -24.03 BNK투자증권 경영지원본부장 직무(現)	-	적격	- 임직원의 인사 및 보수 관리 업무 - 총무 업무 -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디지털 업무 - 소관부서 관련 내부통제 등 집행/운영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및 시행령 25조의3에 의거 정해진 업무범위
전문 (상임, 미등기)	강대수 (姜大洙)	651224	2026.01.01 (2023.04.01 , 연임2)	2026.12.31	WM사업 본부 총괄	-16.01 BNK투자증권 IB사업부장 이사대우 -16.07 동사 WM사업부장 직무 -20.01 동사 WM사업본부장 직무(現) -23.04 동사 WM사업본부장 직무(現)	-	적격	- 파생상품 업무 - 소관부서 관련 내부통제 등 집행/운영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및 시행령 25조의3에 의거 정해진 업무범위
전문 (상임, 미등기)	박두희 (朴斗熙)	680119	2026.01.01 (2025.01.01 , 연임1)	2026.12.31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22.01 부산은행 해운대금융센터 금융센터장 -24.01 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부산은행 겸직) -24.04 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25.01 BNK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 직무(現)	-	적격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 소관부서 관련 내부통제 등 집행/운영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및 시행령 25조의3에 의거 정해진 업무범위
전문 (상임, 미등기)	박은용 (朴銀用)	680804	2026.01.01 (2021.01.01 , 연임4)	2026.12.31	홀세일영업 본부 총괄	-06.12 CLSA증권 선물옵션영업팀 직무 -18.01 BNK투자증권 파생영업부장 직무보 -21.01 동사 상품 -25.01 동사 홀세일영업본부장 직무(現)	-	적격	- 홀세일 영업 파생상품 업무 - 소관부서 관련 내부통제 등 집행/운영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및 시행령 25조의3에 의거 정해진 업무범위
전문 (상임, 미등기)	권용묵 (權容默)	680816	2026.01.01 (2020.01.01 , 연임6)	2026.12.31	FICC영업 본부 총괄	-08.06 SK증권 종합금융투자부장 직무이사 -18.01 BNK투자증권 채권금융센터장 직무보 -20.01 동사 FICC영업본부장 직무(現)	-	적격	- 채권 영업 업무 - 채권 운용 업무 - 소관부서 관련 내부통제 등 집행/운영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및 시행령 25조의3에 의거 정해진 업무범위
전문 (상임, 미등기)	임익성 (任益成)	680904	2026.01.01 (2018.01.01 , 연임8)	2026.12.31	전략운용 본부 총괄	-13.06 메리츠증권증권 EPT팀장 직무보 -16.04 BNK투자증권 MS팀장 직무보 -18.01 동사 상품 -25.01 동사 전략운용본부장 직무(現)	-	적격	- 자기자본특자 관리 업무 - 소관부서 관련 내부통제 등 집행/운영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및 시행령 25조의3에 의거 정해진 업무범위
전문 (상임, 미등기)	염수원 (廉受源)	681208	2026.01.01 (2026.01.01 , 신임)	2027.12.31	준법감시인	-15.01 경남은행 부장 -24.01 은행준법감시인 직무(現)	-	적격	- 준법감시, 자금세탁방지 업무 - 영문 외수탁 업무 -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업무 - 내부회계관리 업무 - 소관부서 관련 내부통제 등 집행/운영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및 시행령 25조의3에 의거 정해진 업무범위
전문 (상임, 미등기)	윤석준 (尹錫俊)	690220	2026.01.01 (2026.01.01 , 신임)	2027.12.31	리스크 관리본부	-22.01 부산은행 전사부장 -23.04 BNK증권 전사 리스크관리본부장 직무 -25.04 부산은행 리스크관리그룹장 직무(現)	-	적격	-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의 집행/운영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및 시행령 25조의3에 의거 정해진 업무범위
전문 (상임, 미등기)	양상근 (梁相根)	691110	2026.01.01 (2020.01.01 , 연임6)	2026.12.31	캐피탈마켓 본부 총괄	-14.01 BNK투자증권 채권부장 직무보 -20.01 동사 SA(리스크)팀장 직무 -24.01 동사 캐피탈마켓본부장 직무(現)	-	적격	- 채권영업 업무 - 소관부서 관련 내부통제 등 집행/운영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및 시행령 25조의3에 의거 정해진 업무범위
전문 (상임, 미등기)	최승표 (崔乘杓)	720715	2026.01.01 (2024.01.01 , 연임2)	2026.12.3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17.02 BNK캐피탈 IT지원부장 -20.01 동사 디지털사업부장 -23.04 동사 D-IT사업본부장 직무(現) -24.01 BNK투자증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직무(現)	BNK 캐피탈	적격	- 정보 보안 업무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및 시행령 25조의3에 의거 정해진 업무범위

사무 (상임) 미등기	김석범 (姜錫範)	710217	2026.01.01 (2024.03.01 , 연임1)	2026.12.31	부동산금융 본부 총괄	-18.02 유안타증권 프로세스투자본부장 -24.01 BNK투자증권 구조화금융본부장 상무(現)	-	직격	- 기업금융 업무 - 소관부서 관련 내부통제 등 집행/운영 - 전략 기획 업무 - 회계 및 세무 관리 업무 - 간접지원 업무 - 인사관리 업무 - 자산관리 업무 - 자문투자 및 결제 업무 - 파고 업무 - 파고 업무 - 소관부서 관련 내부통제 등 집행/운영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및 시행령 25조의3에 의거 정해진 업무범위
사무 (상임) 미등기	안석환 (安奭桓)	710414	2026.01.01 (2024.01.01 , 연임1)	2026.12.31	경영기획 본부 총괄	-18.01 BNK투자증권 서울영업부장 -20.01 동사 영업추진부장 상무보 -22.01 동사 영업추진부장 상무보 -24.01 동사 경영기획본부장 상무(現)	-	직격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및 시행령 25조의3에 의거 정해진 업무범위
사무 (상임) 미등기	이승하 (李承夏)	720830	2026.01.01 (2024.01.01 , 연임1)	2026.12.31	신기술금융 본부 총괄	-17.07 BNK투자증권 전자부장 -19.01 동사 경영기획부장 -20.01 동사 인사부장 상무보 -21.01 동사 인사부장 상무보 -24.01 동사 신기술금융본부장 상무(現)	-	직격	- 기업금융 업무 - 자금투자전문회사 운용 업무 - 소관부서 관련 내부통제 등 집행/운영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및 시행령 25조의3에 의거 정해진 업무범위
사무 (상임) 미등기	홍장표 (洪章杓)	720913	2026.01.01 (2024.01.01 , 연임1)	2026.12.31	OTC영업 본부 총괄	-17.06 삼성증권 퍼센트투자본부장 상무 -23.01 동사 퍼센트비즈니스 자문역 -24.01 BNK투자증권 OTC영업본부장 상무(現)	-	직격	- 파생상품 업무 - 채권영업 업무 - 글로벌채널 일조 업무 - 소관부서 관련 내부통제 등 집행/운영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및 시행령 25조의3에 의거 정해진 업무범위
사무 (상임) 미등기	이호석 (李鎬碩)	740210	2026.01.01 (2021.01.01 , 연임4)	2026.12.31	구조화금융 본부 총괄	-10.01 KTB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이사 -18.01 BNK투자증권 부동산금융1부장 상무보 -21.01 동사 부동산금융본부장 상무(現)	-	직격	- 기업금융 업무 - 소관부서 관련 내부통제 등 집행/운영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및 시행령 25조의3에 의거 정해진 업무범위
사무 (상임) 미등기	장대현 (張大鉉)	740409	2026.01.01 (2026.01.01 , 신임)	2027.12.31	CIB추진본부 총괄	-16.03 트크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22.01 BNK투자증권 경영기획부장 상무대우(現)	-	직격	- IB, 간접지원 업무 - 사후관리 업무 - 소관부서 관련 내부통제 등 집행/운영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및 시행령 25조의3에 의거 정해진 업무범위
사무 (상임) 미등기	김현승 (金賢承)	770522	2026.01.01 (2023.04.01 , 연임3)	2026.12.31	구조화금융 1부 총괄	-16.11 BNK투자증권 IB사업2부장 -19.01 동사 구조화금융3부장 상무보 -20.03 동사 대체투자금융3부장 상무보 -21.01 동사 대체투자금융1부장 상무(現) -23.04 동사 구조화금융1부장 상무(現)	-	직격	- 구조화금융본부 총괄 소속 인원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및 시행령 25조의3에 의거 정해진 업무범위
사무 (상임) 미등기	김인수 (金寅洙)	770618	2026.01.01 (2024.05.13 , 연임1)	2026.12.31	IB금융부 총괄	-05.01 미래에셋증권 기업금융부장 이사대우 -24.05 BNK투자증권 IB금융부장 상무(現)	-	직격	- 기업금융본부 총괄 소속 인원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및 시행령 25조의3에 의거 정해진 업무범위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 기재, 현직여부 표시)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겸직하고 있는 업무(업종, 직위, 경력)를 기재
 3) 제5조 및 제6조의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유무를 확인한 결과 기재
 4)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에 따른 채무구조도에서 정한 채무 및 그 세부내용을 기재

2. 임원현황(변동후)

직위 (상임, 명예, 등기)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만료일	주요경력 ¹⁾	검지사항 ²⁾	비고
사장 (상임, 등기)	신명호 (辛明鎬)	620529	2026.01.01 (2023.12.28, 연임1)	2026.12.31	-18.01 유안타증권IB사업부문대표 전무 -21.01 동사 고문 -22.04 현대차증권 고문 -23.04 법무법인(유한)들라스 고문 -24.01 BNK투자증권 대표이사(現)	-	
상임감사 (상임, 등기)	김필상 (金弼相)	651210	2025.01.01 (2025.01.01, 신임)	2026.12.31	-20.03 금융감독원 부국장 -23.01 동원 금융인원총괄국 자문역 -25.01 BNK투자증권 상임감사위원(現)	-	
사외이사 (비상임, 등기)	박흥신 (朴興信)	590808	2025.03.25 (2023.03.16, 연임1)	2026년3월 정기주주 총회 종료 시까지	-16.07 한화생명보험(주)상임고문 -23.03 BNK투자증권 사외이사(現)	-	
사외이사 (비상임, 등기)	이장우 (李長雨)	601128	2025.03.25 (2023.03.16, 연임1)	2026년3월 정기주주 총회 종료 시까지	-09.03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現) -21.05 한국예탁결제원 자금운용위원 -22.05 한국거래소 자산결재위원(現) -23.03 BNK투자증권 사외이사(現)	부산대 교수 (09.03.01~ 現)	
사외이사 (비상임, 등기)	노희진 (盧熙振)	540903	2024.03.21 (2024.03.21, 신임)	2026년3월 정기주주 총회 종료 시까지	-14.11 코스콤 상임감사 -17.03 SK증권 사외이사 -24.03 BNK투자증권 사외이사(現)	-	
사외이사 (비상임, 등기)	이봉철 (李奉澈)	580523	2024.03.21 (2024.03.21, 신임)	2026년3월 정기주주 총회 종료 시까지	-12.06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전무 -17.10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 사장 -20.01 롯데그림 호텔&서비스BU장 및 호텔롯데 각자 대표이사 -24.03 BNK투자증권 사외이사(現)	롯데 면세점 비상근 고문 (22.12~現)	
사외이사 (비상임, 등기)	김건섭 (金健燮)	560206	2025.03.25 (2025.03.25, 신임)	2027년3월 정기주주 총회 종료 시까지	-08.07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국장 -12.05 동원 증권 담당 부원장 -16.01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17.03 DB금융투자 사외이사 -25.03 BNK투자증권 사외이사(現)	-	
전무 (상임, 미등기)	이상선 (李相善)	650711	2026.01.01 (2024.03.01, 연임1)	2026.12.31	-19.01 KB증권 중부지역본부장 상무 -19.05 동사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24.03 BNK투자증권 경영지원본부장 전무(現)	-	
전무 (상임, 미등기)	강대수 (姜大洙)	651224	2026.01.01 (2023.04.01, 연임2)	2026.12.31	-16.01 BNK투자증권 IB사업부장 이사대우 -16.07 동사 울산영업부장 이사대우 -20.01 동사 영업부장 상무보 -23.04 동사 WM사업본부장 상무 -26.01 동사 WM사업본부장 전무(現)	-	

전무 (상임기) 미등기)	박두희 (朴斗熙)	680119	2026.01.01 (2025.01.01 , 연임1)	2026.12.31	-22.01 부산은행 해운대금융센터 금융센터장 -24.01 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부산은행 겸직) -24.04 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25.01 BNK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 상무 -26.01 BNK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 전무(現)	-	
전무 (상임기) 미등기)	박은용 (朴銀用)	680804	2026.01.01 (2021.01.01 , 연임4)	2026.12.31	-06.12 CLSA증권 신물음선영업팀 전무 -18.01 BNK투자증권 파생영업부장 상무보 -21.01 동사 상무 -25.01 동사 홀세일영업본부장 전무(現)	-	
전무 (상임기) 미등기)	권용목 (權容默)	680816	2026.01.01 (2020.01.01 , 연임6)	2026.12.31	-08.06 SK증권 종합금융팀 부장이사 -18.01 BNK투자증권 채권금융센터장 상무보 -20.01 동사 FICC영업본부장 상무 -26.01 동사 FICC영업본부장 전무(現)	-	
전무 (상임기) 미등기)	임익성 (任益成)	680904	2026.01.01 (2018.01.01 , 연임8)	2026.12.31	-13.06 메리츠증권증권 EPT팀장 상무보 -16.04 BNK투자증권 MS팀장 상무보 -18.01 동사 상무 -25.01 동사 전략금융본부장 전무 -26.01 동사 전략금융1본부장 전무(現)	-	
전무 (상임기) 미등기)	연수원 (廉受源)	681208	2026.01.01 (2026.01.01 , 신임)	2027.12.31	-24.01 경남은행 준법감사인 전무 -26.01 BNK투자증권 준법감사인 전무(現)	-	
전무 (상임기) 미등기)	윤석준 (尹錫俊)	690220	2026.01.01 (2026.01.01 , 신임)	2027.12.31	-22.01 부산은행 검사부장 -23.04 BNK금융지주 그룹리스크관리본부장 상무 -25.04 부산은행 리스크관리그룹장 상무 -26.01 BNK투자증권 리스크관리본부장 전무(現)	-	
전무 (상임기) 미등기)	양상근 (梁相根)	691110	2026.01.01 (2020.01.01 , 연임6)	2026.12.31	-14.01 BNK투자증권 채권부장 상무보 -20.01 동사 S&T본부장 상무 -24.01 동사 캐피탈마켓본부장 전무(現)	-	
전무 (상임기) 미등기)	최승표 (崔承杓)	720715	2026.01.01 (2024.01.01 , 연임2)	2026.12.31	-17.02 BNK캐피탈 IT지원부장 -20.01 동사 디지털사업부장 -23.04 동사 D-IT사업본부장 상무(現) -24.01 BNK투자증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상무 -26.01 BNK투자증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전무(現)	BNK캐피탈 전무	
상무 (상임기) 미등기)	김준한 (金俊漢)	700214	2025.09.01 (2025.09.01, 신임)	2026.12.31	-10.10 삼성증권 뉴욕법인 법인장 -15.01 동사 IB부문 IPO 부서장 이사 -20.01 동사 Corporate Solution 그룹장 이사 -23.01 동사 Corporate Finance 그룹장 이사 -25.09 BNK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장 상무(現)	-	
상무 (상임기) 미등기)	강석범 (姜錫範)	710217	2026.01.01 (2024.03.01 , 연임1)	2026.12.31	-18.02 유안타증권 프로팩트투자본부장 -24.01 BNK투자증권 구조화금융본부장 상무 -26.01 BNK투자증권 부동산금융본부장 상무(現)	-	
상무 (상임기) 미등기)	안석환 (安奭桓)	710414	2026.01.01 (2024.01.01 , 연임1)	2026.12.31	-18.01 BNK투자증권 서물영업부장 -20.01 동사 영업추진부장 -22.01 동사 영업추진부장 상무보 -24.01 동사 경영기획본부장 상무(現)	-	

사무 (상임) 미등기)	이승하 (李承夏)	720830	2026.01.01 (2024.01.01 , 연임1)	2026.12.31	-17.07 BNK투자증권 겸사부장 -19.01 동사 경영기획부장 -20.01 동사 인사부장 -21.01 동사 인사부장 상무보 -24.01 동사 신기술금융본부장 상무(現)	-	
사무 (상임) 미등기)	홍장표 (洪章杓)	720913	2026.01.01 (2024.01.01 , 연임1)	2026.12.31	-17.06 삼성증권 파생본부장 상무 -23.01 동사 파생 비즈니스 자문역 -24.01 BNK투자증권 OTC영업본부장 상무(現)	-	
사무 (상임) 미등기)	이호석 (李鎬碩)	740210	2026.01.01 (2021.01.01 , 연임4)	2026.12.31	-10.01 KTB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이사 -18.01 BNK투자증권 부동산금융1부장 상무보 -21.01 동사 부동산금융본부장 상무 -26.01 동사 구조화금융본부장 상무(現)	-	
사무 (상임) 미등기)	장대현 (張大鉉)	740409	2026.01.01 (2026.01.01 , 신임)	2027.12.31	-16.03 포츠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22.01 BNK투자증권 경영기획부장 상무대우 -26.01 BNK투자증권 CIB추진본부장 상무(現)		
사무 (상임) 미등기)	김현승 (金賢承)	770522	2026.01.01 (2023.04.01 , 연임3)	2026.12.31	-16.11 BNK투자증권 IB사업2부장 -19.01 동사 구조화금융부장 -20.03 동사 대체투자금융3부장 이사대우 -21.01 동사 대체투자금융3부장 상무보 -23.04 동사 구조화금융1부장 상무(現)	-	
사무 (상임) 미등기)	김인수 (金寅洙)	770618	2026.01.01 (2024.05.13 , 연임1)	2026.12.31	-05.01 미래에셋증권 기업금융부장 이사대우 -24.05 BNK투자증권 IB금융부장 상무(現)	-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을 기재)

주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붙임 2)

임원 선임 심사표

성명	신명호	직위	대표이사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공통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성 명	신명호	직 위	대표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 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신명호	직 위	대표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성명	신명호	직위	대표이사
심사항목		심사결과 ^{주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해당사항> IV.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 경영 전반 업무 총괄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영관리 책무와 그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종합 의견 임원결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주)BNK투자증권의 대표이사로서 적임자로 사료됨			
년 월 일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신명호 (인)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신명호 (인)			

주 1) 사외이사의 요건 중 Ⅲ의 요건(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IV의 요건(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유 및 근거를 각 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기타 음영처리된 요건에 대해서는 미기재)

【첨부서류】

-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회보서 등)
-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다만, 임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임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
-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붙임 2)

임원 선임 심사표

성명	이상선	직위	전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공통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성 명	이 상 선	직 위	전 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이 상 선	직 위	전 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성명	이상선	직위	전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주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해당사항> IV.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 경영관리 책무와 그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종합 의견 임원결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주)BNK투자증권의 전무로서 적임자로 사료됨			
년 월 일 BNK투자증권 전무 이상선 (인)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신명호 (인)			

주 1) 사외이사의 요건 중 III의 요건(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IV의 요건(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유 및 근거를 각 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기타 음영처리된 요건에 대해서는 미기재)

【첨부서류】

-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회보서 등)
-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다만, 임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임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
-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붙임 2)

임원 선임 심사표

성명	강대수	직위	전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공통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성 명	강대수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 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 명	강대수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성 명	강대수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주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해당사항> IV.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금융 영업 관련 책무와 그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총 합 의 건 임원결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주)BNK투자증권의 전무로서 적임자로 사료됨			
년 월 일 BNK투자증권 전무 강 대 수 (인)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신 명 호 (인)			

주 1) 사외이사의 요건 중 Ⅲ의 요건(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IV의 요건(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유 및 근거를 각 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기타 음영처리된 요건에 대해서는 미기재)

【첨부서류】

-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다만, 임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임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
-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붙임 2)

임원 선임 심사표

성명	박두희	직위	전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공통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성 명	박두희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 명	박두희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성 명	박두희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주1)}	비 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해당사항> IV.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 경영관리 책무와 그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총 합 의 건 임원결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주)BNK투자증권의 전무로서 적임자로 사료됨			
년 월 일 BNK투자증권 전무 박 두 희 (인)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신 명 호 (인)			

주 1) 사외이사의 요건 중 III의 요건(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IV의 요건(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유 및 근거를 각 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기타 음영처리된 요건에 대해서는 미기재)

【첨부서류】

-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보서 등)
-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다만, 임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임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
-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붙임 2)

임원 선임 심사표

성명	박은용	직위	전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공통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성 명	박은용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 명	박은용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성명	박은용	직위	전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주1)}	비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해당사항> IV.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 금융영업 관련 업무경험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 영업 및 현장의 내부통제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종합 의견 임원결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주)BNK투자증권의 전무로서 적임자로 사료됨			
년 월 일 BNK투자증권 전무 박은용 (인)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신명호 (인)			

주 1) 사외이사의 요건 중 Ⅲ의 요건(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IV의 요건(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유 및 근거를 각 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기타 음영처리된 요건에 대해서는 미기재)

【첨부서류】

-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회보서 등)
-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다만, 임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임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
-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붙임 2)

임원 선임 심사표

성명	권용목	직위	전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공통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성 명	권용목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 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 명	권용목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성 명	권용목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주1)}	비 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해당사항> IV.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 충분한 금융 영업 관련 업무경험 보유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및 책무를 이행하기에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중 합 의 건 임원결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주)BNK투자증권의 전무로서 적임자로 사료됨			
년 월 일 BNK투자증권 전무 권 용 목 (인)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신 명 호 (인)			

주 1) 사외이사의 요건 중 Ⅲ의 요건(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IV의 요건(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유 및 근거를 각 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기타 음영처리된 요건에 대해서는 미기재)

【첨부서류】

-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다만, 임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임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
-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붙임 2)

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	임의성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공동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성 명	임의성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 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임의성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성명	임의성	직위	전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주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해당사항> IV.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금융 영업 관련 책무와 그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종합 의견 임원결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주)BNK투자증권의 전무로서 적임자로 사료됨			
년 월 일 BNK투자증권 전무 임 의 성 (인)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신 명 호 (인)			

주 1) 사외이사의 요건 중 III의 요건(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IV의 요건(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유 및 근거를 각 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기타 음영처리된 요건에 대해서는 미기재)

【첨부서류】

-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다만, 임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임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
-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붙임 2)

임원 선임 심사표

성명	염수원	직위	전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공통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성 명	염수원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 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염수원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성명	임수원	직위	전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주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해당사항> IV.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 금융업 30년 이상 및 준법감시인 경험 보유하고있어 내부통제 관리의무 및 책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종합 의견 임원결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주)BNK투자증권의 전무로서 적임자로 사료됨			
년 월 일 BNK투자증권 전무 임수원 (인)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신명호 (인)			

주 1) 사외이사의 요건 중 III의 요건(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IV의 요건(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유 및 근거를 각 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기타 음영처리된 요건에 대해서는 미기재)

【첨부서류】

-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다만, 임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임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
-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붙임 2)

임원 선임 심사표

성명	윤석준	직위	전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공통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성 명	윤서준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윤석준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윤석준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주1)}	비 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해당사항> IV.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 금융업 30년 이상 및 리스크부문 9년 이상 경험을 보유하고있어 내부통제 관리의 무 및 리스크관리 책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중 합 의 건 임원결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주)BNK투자증권의 전무로서 적임자로 사료됨			
년 월 일 BNK투자증권 전무 윤 석 준 (인)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신 명 호 (인)			

주 1) 사외이사의 요건 중 Ⅲ의 요건(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IV의 요건(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유 및 근거를 각 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기타 음영처리된 요건에 대해서는 미기재)

【첨부서류】

-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회보서 등)
-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다만, 임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임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
-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붙임 2)

임원 선임 심사표

성명	양상근	직위	전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공통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성 명	양상근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 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양상근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성명	양상근	직위	전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주1)}		비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해당사항> IV.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금융 영업 관련 책무와 그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종합 의견 임원결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주)BNK투자증권의 전무로서 적임자로 사료됨				
년 월 일 BNK투자증권 전무 양상근 (인)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신명호 (인)				

주 1) 사외이사의 요건 중 III의 요건(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IV의 요건(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유 및 근거를 각 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기타 음영처리된 요건에 대해서는 미기재)

【첨부서류】

-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회보서 등)
-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다만, 임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임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
-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붙임 2)

임원 선임 심사표

성명	최승표	직위	전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공통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성 명	최승표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 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최승표	직 위	전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성명	최승표	직위	전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주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해당사항> IV.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 IT관련되어 10년 이상의 유관 경험을 바탕으로 지정책무와 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종합의견 임원결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주)BNK투자증권의 전무로서 적임자로 사료됨			
년 월 일 BNK투자증권 전무 최 승 표 (인)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신 명 호 (인)			

주 1) 사외이사의 요건 중 III의 요건(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IV의 요건(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유 및 근거를 각 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기타 음영처리된 요건에 대해서는 미기재)

【첨부서류】

-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전부착 및 본인 확인)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회보서 등)
-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다만, 임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임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
-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붙임 2)

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	강석범	직 위	상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공통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성 명	강석범	직 위	상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 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 명	강석범	직 위	상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성명	강석범	직위	상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주1)}		비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해당사항> IV.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금융영업 관련 업무경험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 영업 및 현장 내부통제 절차 이해도가 높음		
종합의견 임원결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주)BNK투자증권의 상무로서 적임자로 사료됨				
년 월 일 BNK투자증권 상무 강석범 (인)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신명호 (인)				

주 1) 사외이사의 요건 중 III의 요건(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IV의 요건(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유 및 근거를 각 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기타 음영처리된 요건에 대해서는 미기재)

【첨부서류】

-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다만, 임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임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
-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붙임 2)

임원 선임 심사표

성명	안석환	직위	상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공통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성 명	안석환	직 위	상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안석환	직 위	상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안석환	직 위	상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주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해당사항> IV.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 영업기획 등 부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영업 및 경영 전반 업무 총괄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총 합 의 건 임원결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주)BNK투자증권의 상무로서 적임자로 사료됨			
년 월 일 BNK투자증권 상무 안 석 환 (인)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신 명 호 (인)			

주 1) 사외이사의 요건 중 Ⅲ의 요건(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IV의 요건(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유 및 근거를 각 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기타 음영처리된 요건에 대해서는 미기재)

【첨부서류】

-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전부착 및 본인 확인)
* 피환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다만, 임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임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
-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붙임 2)

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	이승하	직 위	상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공통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성 명	이승하	직 위	상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이승하	직 위	상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성명	이승하	직위	상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주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해당사항> IV.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 영업관련 책무와 그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종합 의견 임원결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주)BNK투자증권의 상무로서 적임자로 사료됨			
년 월 일 BNK투자증권 상무 이 승 하 (인)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신 명 호 (인)			

주 1) 사외이사의 요건 중 III의 요건(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IV의 요건(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유 및 근거를 각 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기타 음영처리된 요건에 대해서는 미기재)

【첨부서류】

-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다만, 임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임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
-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붙임 2)

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	홍장표	직 위	상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공통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성 명	홍장표	직 위	상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 명	홍장표	직 위	상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성명	홍장표	직위	상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주1)}		비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해당사항> IV.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 충분한 금융 영업 관련 업무경험 보유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및 책무를 이행하기에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종합 의견 임원결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주)BNK투자증권의 상무로서 적임자로 사료됨				
년 월 일 BNK투자증권 상무 홍 장 표 (인)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신 명 호 (인)				

주 1) 사외이사의 요건 중 III의 요건(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IV의 요건(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유 및 근거를 각 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기타 음영처리된 요건에 대해서는 미기재)

【첨부서류】

-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보서 등)
-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다만, 임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임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
-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붙임 2)

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	이호석	직 위	상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공통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성 명	이호석	직 위	상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이 호 석	직 위	상 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성명	이호석	직위	상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주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해당사항> IV.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 금융영업 관련 업무경험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 영업 및 현장의 내부통제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종합 의견 임원결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주)BNK투자증권의 상무로서 적임자로 사료됨			
년 월 일 BNK투자증권 상무 이 호 석 (인)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신 명 호 (인)			

주 1) 사외이사의 요건 중 Ⅲ의 요건(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IV의 요건(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유 및 근거를 각 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기타 음영처리된 요건에 대해서는 미기재)

【첨부서류】

-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다만, 임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임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
-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붙임 2)

임원 선임 심사표

성명	장대현	직위	상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공통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성 명	장대현	직 위	상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 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장대현	직 위	상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성명	장대현	직위	상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주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해당사항> IV.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 금융투자업 14년 이상 및 CIB담당부서장 2년 경험을 바탕으로 지정책무와 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종합 의견 임원결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주)BNK투자증권의 상무로서 적임자로 사료됨			
년 월 일 BNK투자증권 상무 장대현 (인)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신명호 (인)			

주 1) 사외이사의 요건 중 III의 요건(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IV의 요건(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유 및 근거를 각 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기타 음영처리된 요건에 대해서는 미기재)

【첨부서류】

-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다만, 임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임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
-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붙임 2)

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	김현승	직 위	상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공통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성명	김현승	직위	상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 명	김현승	직 위	상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성명	김현승	직위	상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주1)}	비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해당사항> IV.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 총금융영업 관련 업무경험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 영업 및 현장의 내부통제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종합 의견 임원결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주)BNK투자증권의 상무로서 적임자로 사료됨			
년 월 일 BNK투자증권 상무 김 현 승 (인)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신 명 호 (인)			

주 1) 사외이사의 요건 중 Ⅲ의 요건(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IV의 요건(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유 및 근거를 각 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기타 음영처리된 요건에 대해서는 미기재)

【첨부서류】

-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다만, 임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임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
-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붙임 2)

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	김인수	직 위	상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공동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성 명	김인수	직 위	상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 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 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 명	김인수	직 위	상무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성명	김인수	직위	상무
심사항목		심사결과 ^{주1)}	비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해당사항> IV.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 금융영업 관련 업무경험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 영업 및 현장의 내부통제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종합 의견 임원결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주)BNK투자증권의 상무로서 적임자로 사료됨			
년 월 일 BNK투자증권 상무 김인수 (인)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신명호 (인)			

주 1) 사외이사의 요건 중 III의 요건(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IV의 요건(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유 및 근거를 각 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기타 음영처리된 요건에 대해서는 미기재)

【첨부서류】

-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회보서 등)
-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 이전 근무처가 외국 소재의 금융회사인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원 선임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다만, 임원 선임 보고기한 내 동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임원 선임 심사 시 실제 활용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추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재보고 필요)
-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